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FAO, G20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
2. EU, 규정 개선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계획 제안
3. EU,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4. EU, 공동농업정책 규정 간소화 추진
 5. EU, 24개의 CAP 농촌개발사업 채택
 6. EU, 농업 관련 생태계 보고서 발간
7. WTO, 상급위원회 미국 육류 COOL 위반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5. 6)



FAO, G20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

□ FAO 사무총장, G20 농업장관회의의 공약 환영

- FAO 사무총장은 “천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에서도 포괄적으로 기후변화에도 이바지하는 식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의 식량·영양안전보장 요구를 달성” 한다는 20개국으로 구성된 농업장관회의(G20)에 의한 공약을 환영함.
- FAO 사무총장은 이스탄불 정상회의 연설에서 식량 낭비와 폐기를 경감하기 위하여 G20이 표명한 명확한 계획안을 극찬함.
 - 동 계획안에는 G20 국가와 저소득국 양측의 식량 낭비와 폐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목적 등 새로운 체제 설립이 포함되어 있음.
- FAO 사무총장은 G20에 참가한 농업장관들에게 FAO는 동 체제 설립을 위하여 파트너와 제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식량·영양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공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함.

□ 세계적 문제, 식량 낭비와 폐기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식 성명에는 ‘식품 가치사슬 전체를 통한 식량 낭비와 폐기가 현저히 확대되고 있어 불안 증대’라고 특필되어 있으며, 그것은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의미에서 세계 규모의 문제’라고 기술되어 있음.
- 세계적으로 인간의 소비용으로 생산되는 식량에 3분의 1이 상실되거나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양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3억 톤에 이른다고 함.
 - 식량은 최종제품 혹은 소매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흘러넘치거나, 썩은 것은 낭비되기 쉬움.
 - 또한 소매업자나 소비자의 눈앞에서 부패, 버려지는 것 등은 소비되지 않으면 폐기됨.

□ 지속가능하면서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90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식량·영양안전보장의 달성방법을 논의함.
 - FAO는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식량공급을 60%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장관회의에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매 및 소비를 통한 지속적이면서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음.
 - 이러한 시스템 확립은 농촌지역의 식량공급 확대와 특히, 소규모농가, 여성 및 젊은 층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인간다운 일' 등을 제공하는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음.
- 또한 지속적인 식량시스템이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언급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력(fertility)¹⁾과 보수능력 개선을 통하여 황폐해진 땅의 복구가 농업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된 요소라고 서술하고 있음.

□ 시장의 투명성

- 장관회의에서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강화에 합의함.
 - G20 이니셔티브에 의해 탄생한 AMIS는 FAO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시장의 투명성의 촉진과 정책조치의 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농업장관들은 AMIS는 이미 성공한 이니셔티브이지만, 신뢰성이 높고 정확하면서 시의 적절하게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와 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하여, AMIS에 있어서 보다 깊고 긴밀한 연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함.

1) 토양의 화학적·이학적·미생물학적인 여러 성질이 종합된 것으로, 식물양분량(植物養分量)의 대소로 표시되며, 양분량이 많은 토양일수록 지력이 높다고 함. 지력은 오랜 세월을 걸친 기상·지형·토양의 모태, 인간의 관리 등과 관계가 깊음. 지력과 관련하여 생산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확되는 작물의 생산량으로 표시됨. 단지 생산력이라고 하면 토양뿐만 아니라 작물의 종류, 재배법, 기상과 직접 관련이 있음.

□ 충분한 영양은 인간개발의 전제조건

- 세계에는 아직 약 8억 명이 기아에 처해 있으며, 영양실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약 2억 명이 미량영양소결핍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중소득국에서는 비만이 증가하고 있음.
- G20 장관회의에서는 충분한 영양을 “인간의 발달, 생산성 및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지난 해 11월 FAO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영양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에서 채택된 영양에 관한 로마 선언이 재확인되었음.
 - 장관들은 정부와 다른 관계자에게 국가의 식량과 영양을 위한 정책에서 ICN2의 행동체계를 수용하도록 강하게 권장하고 있음.

□ 책임 있는 투자

- 19개국과 EU로 구성된 G20 가입국은 거래관행이나 정책, 투자 판단을 통하여 세계의 식량·영양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동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에서 토지, 어업과 삼림의 보유 권리에 관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임의자발적 지침” 및 “농업과 식량시스템에서의 책임투자에 관한 원칙”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과 국제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표명하였음.

※ 자료: FAO(2015.05.08)

EU, 규정 개선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계획 제안

□ EU집행위원회의, 입법절차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 EU집행위원회는 EU 입법절차 개선을 위하여 제안사항을 제시함.
 - 공개적인 의사결정과정, 신규법안의 수준 향상, 기존법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검토 등을 목표로 함.
 - EU집행위원회의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DG Agri)은 이미 개정된 공동농업정책(CAP)규정 간소화 검토를 수행 중임.
 - 농업규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사항은 없으나 위임 및 이행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사항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19일 '규정개선 의제(Better Regulation Agenda)'를 발표함.
 - 이사회는 이를 '전반적 정책주기 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정책 제안'이라고 표현함.
 - 또한 내부절차 개선 계획뿐만 아니라, 정책 준비과정 및 효율적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과 EU집행위원회-유럽의회-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개선 및 협상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기관 간 협상(Interinstitutional Agreement, IA)'을 통하여 입법 과정을 개선시키고자 함.
 -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본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기관 간 협상(IA)에는 기존법안의 평가와 효과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 규정 및 이행 프로그램(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강화, 기관 간 투명성 강화, 회원국의 부적절한 골드 플레이팅(gold plating)²⁾ 제한 등이 포함됨.
- EU집행위원회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행의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를 독립적인 '규정조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2) 회원국 정부가 EU 정책 입법 시,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EU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함.

- 규정조사위원회는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며,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것임.
- 또한 새로운 법안의 영향평가 또는 기존법안의 적합성 확인 및 평가에 대하여 확장된 권한을 보장받게 될 것임.

□ 농업 정책

- 규정개선 의제에는 CAP법안 개정 및 검토와 관련한 제안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이는 농업위원회가 CAP규정 간소화 제안을 통하여 전반적인 2014~2020 CAP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이미 시작하였기 때문임.
- CAP규정 간소화를 위한 첫 번째 변화는 '생태보전구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2015년까지 공개될 예정임.
- 회원국은 CAP규정 간소화에 대하여 공동입장을 합의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Phill Hogan)은 유럽의회의원들에게 CAP규정 간소화에 대하여 통합된 의견을 요청함.
- EU집행위원회는 CAP 공동단일시장조직에 대하여 약 200개 정책 병합을 진행하고 있음.
 - 이는 EU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³⁾ 따른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임.
 - 규정개선 제안에 따르면, 40개의 위임 및 이행규정이 병합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는 분야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목적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을 색출하여 폐지시킬 계획임.
 -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연간 활동은 이미 시행 중이며, 이러한 활동은 모든 정책분야로 확대될 것임.

3) EU은 2004년 6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헌법조약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무산되었음. 이에 유럽헌법조약에서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 공휴일 등을 제정하기로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개정하여 새롭게 합의한 것이 동 조약임.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임.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부름.

□ 위임 및 이행규정

- EU 입법절차에는 기본절차 이외에도 '위임 규정(delegated acts)'과 '이행 규정(implementing acts)'이 있음.
 - 위임 규정은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행 규정은 회원국 간의 균등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60일 간 본 규정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일부 규정은 2014~2020 CAP에 특별한 문제없이 적용되었음.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5년까지 발표될 간소화 방안은 주요 규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위임 및 이행 규정과 관련한 변동사항일 것이라고 함.
- 규정개선 의제는 모든 정책분야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공개되지 않는 위임 규정은 입법 또는 채택되기 전 4주 동안 공개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변경될 규정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있음.
- EU 도소매업자와 경제단체(Euro Commerce)들은 규정개선 의제를 크게 환영함.
 - 규정개선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규정개선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 50개 이상의 시민단체 연합은 규정개선 의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가치를 위한 필수규제 기능이 약화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시민단체 연합은 '규정개선 감시단(Better Regulation Watchdog)'을 설립하여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2)

EU,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

□ EU집행위원회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발행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특정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의무화는 소비자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
 - 유제품, 소비량이 적은 일부 육류제품, 비(非)가공식품, 단일재료 제품 또는 식재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원산지표시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함.
- 2011년 채택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정보 공개에 대한 EU규정(1169/2011)은 원산지 표시제의 타당성 조사를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발행된 보고서들은 유럽의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검토될 예정임.
- 첫 번째 보고서는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DG Agri)가 주도하였으며, 유제품과 일부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의 타당성을 평가함.
 - 특히 말고기, 토끼고기, 가금육, 야생 수렵육 등 일부 육류를 조사함.
 - 추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및 잠재적인 추가 비용, 그리고 사업체와 관리당국이 갖추어야 할 추가 조건에 대하여 조사함.
- 농업 및 농업 발전 집행총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에 대한 추가 조건은 생산자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추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여부는 불분명함.
 - 자발적인 원산지표시제는 일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일부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도입 시 오히려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U 원산지표시제는 이미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염소고기에 적용되고 있음.

-
- 두 번째 보고서는 위원회의 보건·소비자총국(DG Sante)가 주도하였으며, 비(非)가 공식품, 단일재료제품 또는 식재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소비자 수요여부를 조사함.
 - 본보고서는 EU시장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원산지표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소비자는 전반적인 식품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흥미가 있으나, 육류 및 가공육류, 유제품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관심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원산지표시제도와 일부 특정품목에 한하여 의무적인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2)

EU, 공동농업정책 규정 간소화 추진

□ EU회원국, 2014~2020 공동농업정책(CAP) 규정 간소화 공동입장 합의

- EU회원국은 2014~2020 CAP규정 간소화(simplification)관련 공동입장에 합의함.
 - 회원국 정부는 EU집행위원회에 녹색화(greening) 사업요건 및 복잡한 행정제도의 간소화를 요구함
 - 2015년 5월 1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농장이사회(Farm Council)에서 CAP규정 간소화에 대한 이사회 결정사항(Council Conclusion)이 채택됨.
- EU집행위원회는 생태보전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에 대하여 회원국의 자율권이 더 많이 보장되는 CAP 규정 간소화를 제안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Phil Hogan)은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CAP규정 간소화를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CAP규정 간소화에 대한 통합된 의견을 요청함.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및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를 위하여 현재 모든 CAP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있음.
 - 2015년 말까지 CAP규정 간소화 추진 계획이 제안될 예정임.
 - CAP규정 간소화는 농식품 보호를 위한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 시장조치, 품질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추진될 것임.
- CAP규정 간소화는 기본법안 개정 없이 적용 가능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회에 따르면 CAP규정 간소화는 보조적인 규정으로서 위임 및 이행법률(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에 따른 규정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EU전역에서 통일된 적용을 보장할 것임.

□ 녹색화 사업과 연계

- EU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농민과 행정부의 부담완화를 위한 CAP 규정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언 및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녹색화 사업요건 간소화가 이사회 결정사항의 주요 내용임.
 - 개혁논의를 통하여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이후 EFAs를 검토하고, 잠재적 농장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가 발견될 경우 규정변경을 제안할 것임.
-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에 영구초지(permanent grassland), 작물 다양성, 그리고 유형별 생태보전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규정 간소화를 요청함.
 - 녹색화 사업에 대한 동등성제도(equivalence scheme) 요건의 간소화가 필요함.
 - 회원국에게 자국의 자연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보장하고 설정된 통제권 범위를 확대하여 동 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음.
-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녹색화 사업 통제를 위하여 위험기반의 비율적 접근법이 강화되어야 함.
 - 관련 위험성, 총량,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목적 및 성과를 반영하는 빈번한 점검체계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성과연계 점검체계 확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회원국은 녹색화 사업 통제를 위한 복잡한 규정은 개선되어야 하며, 사소한 침해와 같은 규정 비(非)준수 문제에 대하여 비례적불금 삭감과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2015에서 2016년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2017년 이후부터 농민들은 30%의 녹색화 구성 요소의 손실뿐만 아니라 기본 지원금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에 의하여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지침은 CAP 이행과 비용효율성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간소화될 예정임.
 - 활동 농업인(active farmer)의 정의, 젊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인 자격, 소규모 농가 지원제도, 자발적 동조화지원 등의 간소화가 필요함.

□ 생태보전지역 유연성을 위한 간소화 조치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 추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생태보전지역의 요건을 발표함.
 - 2015년 5월 11일 농장위원회(Farm Council)는 생태보전지역의 이행에 대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회원국은 생태보전지역의 유연성 확보는 금년 주장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에 적용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CAP규정 간소화 추진은 어떠한 법안 개정도 요구하지 않음.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에 따르면 직접지불제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은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지침에 통합될 것이라고 함.
- 2014년 발행된 지침의 변경사항은 CAP관리위원회 회의(CAP 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통하여 회원국 관련 전문가들에게 발표될 것임.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20일 개최된 CAP 관리위원회에서 위임 및 이행법률의 변경된 지침이 발표되었으며, 회원국은 이를 즉시 적용할 수 있음.
- 농장위원회에서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CAP규정 간소화 검토에 대하여 공동의견을 합의함.
 - 회원국은 녹색화 사업의 행정업무 개선을 위하여 간소화된 규정을 요구함.

□ 문계에결을 위한 생태보전지역 승인

- 2013년 CAP 개혁 협상에서 EU집행위원회는 농가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였음.
 - 2016년 EU 잠재농업생산성이 감소될 경우 주도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함임.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생태보전지역에 대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변경의 검토 및 제안을 약속함.
 - 회원국에게 직접지불금에 대한 확장된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 생태보전지역 기록요건, 생태보전지역 규정 조정, 농지확인체계(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 LPIS)하의 영구초지 기록, 잘못된 공표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보상 등에 대한 것임.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유럽의회의원들과 농민들이 강조하는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함.
 - 확장된 유연성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임.
- 회원국은 공표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일부 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표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공표되지 않은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규모농가 비율이 높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제도가 필요함.
- 생태보전지역 정의에 따르면 생태보전지역 간 유연성은 허용되지만, EU집행위원회는 4m 폭까지 계산되는 울타리를 허용하고 있음.
- 생태보전지역 조정에 대하여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인접한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유연성을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함.
 - 생태보전지역은 반드시 필지경계(parcel boundary)에 인접하여야 하며, 경계점과 생태보전지역 사이의 제한된 완충지역(buffer area)은 구분되어야 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농지확인체계(LPIS)내의 일부 특정유형의 영구초지 식별을 위하여 간소화된 접근법을 수용할 준비를 이미 완료하였다고 언급함.
 - EU집행위원회는 잘못된 공표로 인하여 누락된 생태보전지역이 보상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는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함.
- 영구초지 의무와 휴한지의 분류는 추후 새로운 지침서를 통하여 더 자세히 논의될 예정임.
 - 생태보전지역에 따른 휴경지 공표기간과 농업환경책무에 따른 5년의 영구초지 유지기간은 5년의 영구초지 기간에 계산되지 않음.

□ 시장 조치와 농촌개발

- EU집행위원회는 시장관리도구로 대책위원회(Task Force)를 설치함.
 - 대책위원회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따른 200여개의 CAP이행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임.

-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대책위원회는 불필요한 조건 및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업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특히 시장표준 간소화 및 능률화 방안을 마련하여 과일 및 채소 분야의 생산자 조직과 사업 운영자들의 행정업무를 개선하여야 함.
- 회원국은 사적소유와 공공개입과 같은 안정망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원국은 CAP 제2축(pillar)에 따른 농촌개발사업과 국가승인의 지역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규정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사업 승인과정에서 예상되지 않은 법적규정은 추가될 수 없음.
 - CAP 제2축에 따른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규정이 요구됨.

□ 중간검토 여부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 제안은 위임 및 이행법률의 보조적인 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회원국은 기본적인 주요 CAP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회원국은 CAP규정의 중간검토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상이한 의견을 보임.
 - 회원국 일부는 CAP규정의 중간검토에 대한 협상진행에 동의하는 반면 반대하는 다른 회원국도 존재함.
-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중간검토는 진행되지 않지만, EU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CAP간소화에 대한 계획안(Initiatives)을 제시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는 위임 및 이행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지침, 기술적 지원 및 협력 촉진, 그리고 국가 및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진행을 위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CAP규정의 간소화가 달성되어야 함.
- 2013년 개혁논의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2018년까지 새로운 CAP규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U 집행위원회의 반응

-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CAP규정 간소화에 대한 이사회 결정사항을 검토 및 감독하는 의장 취임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CAP규정 간소화에 기여할 것을 요청함.
- 현재 농장위원회 의장인 라트비아 농업부 장관(Jānis Dūklavs)은 회원국에게 새로운 CAP규정 간소화 추진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보여줄 것을 요구함.
- EU 농업담당집행위원(Phil Hogan)은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평가 후 응답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농업부 장관들에게 자국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 규정 및 권위는 인정될 것이라고 상기시킴.
 - EU집행위원회는 CAP규정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선별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의 목표는 복잡한 실행규정과 항목 수를 대폭 감소시켜 실질적인 간소화를 보장하는 것임.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녹색화 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통합된 행정 및 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을 통하여 젊은 농업인 지원과 직접지불제를 보완한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15)

EU, 24개의 CAP 농촌개발사업 채택

□ EU집행위원회의, CAP 농촌개발사업 채택 공표

- EU집행위원회는 24개의 새로운 2014~2020 CAP 농촌개발사업(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s)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 CAP 제2축(Pillar Two)에 따라 EU예산은 총 270억 유로로 책정되었으며, 추가 공동자금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민간자금이 사용될 수 있음.
- 2015년 5월 26일, EU집행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승인함.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베를린(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니더작센(Lower Saxony)과 브레멘(Bremen), 라인란트팔츠(Rhineland Palatinate), 자를랜드(Saarland),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튀링겐(Thuringia)), 아일랜드, 이탈리아(국가농촌네트워크 사업, 볼차노(Bolzano),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 토스카나(Toscana), 베네토(Veneto)), 루마니아, 스페인(국가 사업, 아라곤(Aragón), 라리오하(La Rioja), 빠이스 바스꼬(País Vasco)), 스웨덴, 영국(스코틀랜드(Scotland)와 웨일스(Wales)) 등임.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에 따르면 농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회원국 또는 해당지역이 각 목표와 환경에 따라 자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관련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임.
- 금번 채택된 농촌개발사업은 영향력이 큰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의 농업 미래세대 발전을 위한 현대화, 인구가 적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광대역 구축, 스웨덴의 유기농업 지원, 아일랜드의 친환경 토지관리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 불가리아는 국가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적자금 29억 유로를 2014~2020

년 예산으로 책정함.

- CAP 직접지불금에 따른 2,800만 유로를 포함한 EU예산 24억 유로와 국가자금 5억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국가 우선순위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식품산업의 균형발전의 목표에 따라 농업 및 임업부문에서 활동 중인 약 3,500개의 자작농가와 약 120개의 기업이 투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약 4,000명 이상의 소작농을 위한 농장개발과 약 1,630명의 젊은 농업인 양성, 그리고 초기 사업진출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될 것임.

○ 루마니아는 국가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95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CAP 제1축에 따른 1억 1,230만 유로를 포함한 EU예산 81억 유로와, 국가공동자금 13억 4,0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부카레스트(Bucharest)의 현대화 지원, 약 3,400개의 농장과 협동조합 지원, 3만 여명의 소작농 지원, 약 9,400명의 젊은 농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치가 있음.

○ 체코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공동자금 7억 6,900만 유로와 EU예산 23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주로 천연자원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생물다양성 보호, 친환경 경작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약 3,500개의 농업 및 임업 기술부문, 약 1,450개의 투자사업, 약 830개의 식품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 아일랜드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39억 2,000만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함.

- EU예산 21억 9,000만 유로와 317만 유로의 국가자금이 포함된 금액임.
- 아일랜드 농촌개발사업의 주요 우선순위는 농업 및 임업과 관련한 생태계 보존, 강화, 복원임.
-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총 예산의 75%가 100ha 이상의 농업지역에 할당될 것임.
- 생물다양성 보존, 효율적인 물 관리와 토양침식 예방을 위하여 약 20%의 농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임.

- 또한 아일랜드 농장의 약 10%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현대화될 전망이다.
- CAP 제2축에 따라 영국 웨일스 농촌개발을 위하여 11억 3,000만 유로가 책정됨.
 - CAP 직접지불제에 따른 2억 9,240만 유로를 포함한 EU예산 6억 5,580만 유로와 국가공동기금 4억 7,02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총 예산의 56%가 천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경작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금으로 할당될 것임.
 - 70만 헥타르의 농지보호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존, 효율적인 물관리, 토양침식 방지 등 친환경 농지관리를 지원할 것임.
- 스코틀랜드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16억 8,0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CAP 제1축에 따른 3억 3,500만 유로를 포함한 EU 자금 8억 4,400만 유로와 국가자금 4억 8,900만 유로, 그리고 추가 공적자금 1,2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총 예산의 80%는 농업 및 임업 관련 생태계 보존 및 강화를 위하여 할당될 것임.
 - 600만 헥타르 이상의 농업 및 임업지역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효율적인 물관리, 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지 관리를 목표로 함.

□ 스웨덴, 크로아티아

- 스웨덴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43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예산으로 책정함.
 - CAP직접지불금에 따른 1,800만 유로를 포함하는 EU예산 8억 유로와 국가공적자금 25억 유로 및 추가 공적자금 2,9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농업 및 임업관련 생태계 보존, 강화, 복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임.
 - 28%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계약을 체결하고, 약 33%의 농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물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임.
 - 약 17만개의 장소에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할 것임.
- 크로아티아는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CAP 제2축에 따른 EU예산 20억 유로와 국가자금 3억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함.
 - 농촌개발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가 및 식품부문의 구조조정과 현대화임.
 - 약 2,000개의 소작농가와 약 5,000명의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농업인, 그리고 약 1,000여명의 젊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것임.

□ 스페인, 이탈리아

- 스페인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공동자금 1억 9,100만 유로와 EU예산 2억 3,800만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함.
- EU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국가차원의 농촌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을 발표함.
 -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치와 생산자단체 (Producer organization, POs) 설립을 위한 지원도 포함됨.
 - 라 리오하(La Rioja)지역에 2억 160만 유로, 아라곤(Aragon)지역에 9억 700만 유로, 바스코(Vasco)지역에 2억 9,100만 유로가 지원될 것임.
- 이탈리아는 2014-2020 전국 농촌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 1,5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함.
 - EU예산 5,960만 유로와 국가자금 5,500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임.
- 많은 이탈리아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농업지역에 11억 9,000만 유로의 상당한 자금이 지원될 것임.
 - 지역차원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베네토(Veneto)에 11억 9,000만 유로, 토스카나(Tuscany)에 9억 6,200만 유로, 볼차노(Bolzano)에 3억 6,600만 유로가 지원될 것임.

□ 독일

- 독일은 지역차원의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발표됨.
 -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Berlin, Brandenburg), 니더작센과 브레멘(Lower Saxony, Bremen), 라인란트 팔츠(Rhineland-Palatinate), 자를란트(Saarland),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튀링겐(Thuringia)등의 농업 지역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이 발표됨.
 - 이전에 발표된 지역은 바이에른(Bavaria),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임.
- 금주 CAP 제2축에 따라 니더작센과 브레멘(Lower Saxony, Bremen)은 지역차원의 농촌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았으며, 최대 1,199억 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CAP 제2축에 따라 농촌개발조치를 위한 지출은 총 11개의 주제별 목표로 구분됨.

- 일부 회원국은 조합계약(Partnership Agreements, PAs)을 확대하여야 하며, EU의 구조적 투자기금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강조되어야 함.

표 1 최근 승인된 농촌개발사업

| 농촌개발사업(RDPs) | EU 자금 (100만 EUR) | 총 제2축 기금 비율 (%) |
|-------------------------------------|---------------------|--------------------|
| 불가리아 | 2,236.70 | 2.38 |
| 크로아티아 | 2,026.20 | 2.04 |
| 체코 | 2,305.70 | 2.32 |
|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 709.6 | 0.71 |
| 독일-베를린(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 1,050.70 | 1.06 |
| 독일-니더작센(Lower Saxony)과 브레멘(Bremen) | 1,119.90 | 1.13 |
| 독일-라인란트팔츠(Rhineland Palatinate) | 299.8 | 0.3 |
| 독일-자를랜드(Saarland) | 33.6 | 0.03 |
| 독일-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 419.5 | 0.42 |
| 독일-튀링겐(Thuringia) | 679.7 | 0.68 |
| 아일랜드 | 2,190.60 | 2.2 |
| 이탈리아-국가농촌네트워크 사업 | 59.7 | 0.06 |
| 이탈리아-볼차노(Bolzano) | 158 | 0.16 |
| 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냐(Emilía-Romagna), | 513 | 0.52 |
| 이탈리아-토스카나(Toscana), | 414.7 | 0.42 |
| 이탈리아-베네토(Veneto) | 510.7 | 0.51 |
| 루마니아 | 8,128.00 | 8.18 |
| 스페인-국가 사업 | 237.8 | 0.24 |
| 스페인-아라곤(Aragón) | 467 | 0.47 |
| 스페인-라리오하(La Rioja) | 70 | 0.07 |
| 스페인-빠이스 바스코(Pais Vasco) | 87.1 | 0.09 |
| 스웨덴 | 1,763.60 | 1.78 |
| 영국-스코틀랜드(Scotland) | 844.7 | 0.85 |
| 영국-웨일스(Wales) | 655.8 | 0.66 |

자료: European Commission,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9)

EU, 농업 관련 생태계 보고서 발간

□ EU집행위원회의, '자연 상태(State of Nature)' 보고서 발행

- 2015년 5월 20일, EU집행위원회는 농업이 미치는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함.
-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조류 및 기타 종(種)의 생태환경에 가장 큰 위협이 됨.
 - 특히 농업은 수계(水系)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토양 생태계의 최대 위협은 작물 경작, 가축 방목, 시비(施肥), 방제 등에 의한 변화라고 경고함.
- EU집행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EU 환경정책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인 조류 보호지침(Birds directive)과 서식지 보호지침(Habitats directive)을 평가함.
 - 본보고서는 두 가지 지침을 모두 평가한 최초의 보고서이며, 지금까지 실시된 환경평가 중 가장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EU 내 대부분의 조류 생태계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secure status)이며 기타 종(種)의 서식지는 개선됨.
 - 보호정책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EU집행위원회는 조류 보호지침과 서식지 보호지침의 평가결과를 발표함.
 - 240종의 조류와 1,200종의 기타 생물 중, 그리고 231개의 서식지 유형을 조사하여 평가함.
 - 야생조류의 52%는 안전한 상태이나, 17%는 여전히 멸종위기 상태이고, 15%는 멸종취약(near threatened)상태임.
 - 기타 종의 60%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초지 또는 습지, 사구지역의 '특별관리구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대부분의 서식지는 취약한 상태임. 평가지역의 47%가 취약 또는 부적합한 상

태이며, 30%는 취약 또는 위험한 상태임.

□ 농업활동에 따른 영향

- 토양 생태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위험요소는 농업과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임.
 - 특히 농업에 따른 경작방식 변화, 가축 방목, 비료 및 농약 사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 자연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수자원 변화, 수계 변화, 서식지간의 연결성 취약, 취수(取水)등 임.
- EU집행위원회는 2010년 생물다양성 목표달성을 실패한 이후 2020년까지의 목표를 재설정함.
 - 본보고서는 2020년 생물다양성 중간평가에 반영될 것임.
 - 중간평가에서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지침 하의 자연보전상태 개선을 위한 계획 가능한 목표가 설정될 것임.
 - 그러나 생물다양성 목표 대상지역의 약 50%만이 생물다양성 보존 및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동농업정책(CAP), 공동어업정책(CFP) 그리고 EU지역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고 추측함.

□ 성공적인 공동농업정책(CAP) 사업

- 금번 보고서에서는 CAP사업의 몇 가지의 성공사례와 함께 멸종위기 종과 서식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 조사된 사례 중 농업이 주요 위험요소인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
- CAP 농업환경정책에 따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보호조치실행을 통하여 흰죽지수리(Eastern Imperial Eagle)의 서식지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으며, 현재 개체 수가 안정되고 있음.
 - 흰죽지수리는 전통적으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저지대에 서식하는 종(種)이지만 사냥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고지대로 이동하였음.

-
- 발트 해 지방에서는 서식지 보호지침에 따라 해안목초지(Boreal baltic)가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대상지로 선정됨.
 - 에스토니아 정부는 소비에트 시대에 파괴된 목초지 복구를 위하여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농민들은 목축을 재개함.
 - 집중적인 농업환경정책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목초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유인을 제공함.
 - 2012년까지 약 950개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에스토니아 지역의 전체 목초지 50% 이상이 합의사항에 포함됨.
 - EU집행위원회는 해안목초지가 여전히 부적합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나 점차 환경조건이 개선되어 안전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함.

□ 유기농업의 효과

- 최근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인근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함.
 - 유기농지는 인근의 기존농지 생물다양성 보존 및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영국 스완지 대학(Swansea University)과 프랑스의 연구기관들이 공동 진행한 것으로 유기농지의 유무 또는 밀집도에 따라 인근지역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고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5.22)

WTO, 상급위원회 미국 육류 COOL 위반

□ WTO, 미국 육류 COOL 위반 판결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상급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미국 육류의 의무적 원산지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을 위반하였으며, 2014년 10월 패널이 제시한 견해에 지지한다고 보고함.
 - 패널의 견해는 WTO의 TBT협정 제2.1조4)에 대하여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나타낸 것임.
- 동 상급위원회의 보고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 및 멕시코 정부는 금번 보고를 환영하며 WTO에 대하여 보복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속을 시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단 보복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됨.
 - (1) WTO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ard, DSB)는 이번의 상급위원회의 보고를 채택(보고일부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 (2) 중재에 의한 이행 기한의 결정(채택 후 원칙적으로 15개월 이내)
 - (3)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부에서 DSB에 대하여 대항조치 승인 신청
 - (4) 대항조치의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재에 위탁(이행 기한 후 30일 이내)
 - (5) 중재가 결정되면(이행 기한 후 60일 이내) 그 후 중재한 곳에서 대항조치의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 승인, 발동의 수속이 이루어져 보복 조치가 실제로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그 시기는 2015년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이전 보복 조치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체리, 초콜릿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멕시코는 대상 목록을 공포하지 않고 있지만, 돼지고기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4) 내국민대우: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의무.

이 높다고 보임.

○ 미국의 육류, 낙농유제품, 곡물 등 관련 단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의무적 원산지 표시 개혁연합(COOL Reform Coalition)”⁵⁾은 미국의회에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성명을 발표함.

- 한편 미국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에 동 제도의 유지와 관련하여 찬반양론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의회에서의 동향이 주목됨.

※ 자료: ALIC(2015.05.18)

자료 작성: 이해은 전문연구원, 홍예선 연구원

5) 축산물과 곡물관계 단체로는 미국사료산업협회(AFIA), 옥수수정제업협회(CRA), 국제유제품협회(IDFA), 미국계란생산자협회(NAEF), 전국육우생산자 쇠고기협회(NCBA), 미국옥수수생산자협회(NCGA), 미국곡물사료협회(NGFA), 전국생유생산자 협의회(NMPF), 미국돼지고기생산자 협의회(NPPC), 미국북미육류협회(NAMI), 계란생산자연합(UEP),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 등이 가입하고 있음.